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 판매 등 제한〉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42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4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12.
- (3) 회 부 일 : 2026. 3.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하 ‘판매 등’이라 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등이 허용되는 경우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및 제25조·제26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6(자살위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판매 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같다)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인증 등을 통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④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2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

2. 제1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자살위해물건을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고시²⁾하고 있음.

□ 한편, 「사망원인통계」(국가데이터처)에 따른 10대 자살자 수 현황을 보면, 2020년 317명에서 2024년 37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³⁾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2014년 대비 2023년 자해·자살 발생, 입원 및 사망 사례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0년~2024년 10대 자살자 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살자 수	317	339	337	370	372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 5. (생 략)

2)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2조(자살위해물건 지정)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

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3) ‘손상 환자의 주요 특성, 교통사고 감소 및 추락·미끄러짐 증가 추세’(2026. 3. 30.)

< 2014년 대비 2023년 소아·청소년 손상 환자 현황 >



* 자료원: 퇴원손상심층조사(2014년,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4년, 2023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14년, 2023년), 사망원인통계(2014년, 2023년)

** 2014년과 10년 비교를 위해 연령은 0-19세로 비교

□ 특히, 청소년 자살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환경이 지적⁴⁾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등의 정보가 공유되고,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알고리즘에 따라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이나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사설] 청소년 자해·자살 시도 급증, 약물·SNS 대책 시급하다.(한겨레, 2026. 3. 30.)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1787.html?utm_source=chatgpt.com)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⁵⁾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등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청소년 자살 위험 감소 효과와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자살위해물건 판매 등을 제한하는 유통수단을 정보통신망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할지에 관하여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

□ 또한, 현행법에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금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⁷⁾하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6) 참고로, 「농약관리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자살 등을 위한 농약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농약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유통수단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1의3. (생략)

1의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5. (생략)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5. (생략)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면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체계와 비교할 때,

자살위해물건 판매 등의 제한 대상을 청소년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개정안 제19조 제목에서 ‘온라인’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고, 유사 입법례⁸⁾와 같이 ‘온라인 판매 제한’을 ‘온라인 판매 등 제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행위 유형을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제25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8)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⑩ (생략)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구매자의 특성, 구매의 용도, 안전사용 등을 확인 · 안내하기 어려운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접근 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자살위해물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이 그 유해성을 오인하거나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극히 높거나 노출 시 회복이 어려워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지정된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자살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접근 금지와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물건이므로, 판매 규제를 연령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살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 · 무상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현행법상의 자살위해 물건의 범주가 불분명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물건이 자살위해물건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국민 예측가능성이 낮아져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판매·대여·배포·무상 제공하는 자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최근 디지털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소비자·생산자·판매자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